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2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다.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
- 라.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이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 - 1)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 - 2)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 - 3)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마. 라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바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위반행위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
가. 최근 3년(기간 계산 시 법	법 제31조제1	경고	등록취소		
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	항제4호				
휴업기간은 제외한다) 이상					
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					
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					
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					
<u>+</u>					
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등록취소	
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	항제5호	3개월	6개월		
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					
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					
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					
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					
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					
하여 매우 불량으로 평가한					
경우(불량으로 2회 평가한					
경우에는 매우 불량으로 1회					
평가한 것으로 본다)					
다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	
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	항제6호	3개월	6개월		
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					
시설물의 손괴(損壞)나 구조					
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					
킨 경우					
라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	
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	항제7호	1개월	3개월		
한 경우					
마.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	
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	항제8호	3개월	6개월		
바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		영업정지	영업정지	등록취소	
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	항제9호	1개월	3개월		

사. 최근 2년간 법 제35조에 따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
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	항제12호	1개월	3개월	
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				
사유가 발생한 경우				
아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
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	항제13호	3개월	6개월	
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				
의 손괴(損壞)나 구조상의 중				
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				
자.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,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
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	항제14호	1개월	3개월	
진단,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				
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				
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				
격이 있는 자(이하 이 표에				
서 "기술자"라 한다)가 아닌				
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				
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				
경우				
차.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
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	항제15호	3개월	6개월	
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				
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				
행하게 한 경우				
카.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
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	항제16호	1개월	3개월	
청이 있는 경우				